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06.09.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김O희	71.02.16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처분 통보	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	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담일자(21.04.23) 및 1,2차 출석통지일에 출석하지 않음. 1차 출석통지:21.04.29 2차 출석통지:21.05.10	○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○처분일로 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06.09. ~ 2021.06.23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서보라(Tel. 054-288-358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